

투자신탁 명칭 : 한국투자 KP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3 호(USD)(채권) (#06H19)

□ 변경전·후 신탁계약서 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한국투자 KP <u>전문투자형</u> 사모 증권 투자 신탁 13 호(USD)(채권)	한국투자 KP <u>일반</u> 사모 증권 투자신탁 13 호(USD)(채권)
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7. "사모형"이라 함은 <u>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</u> 법시행령 제 14 조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<u>49인</u>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	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7. "사모형"이라 함은 <u>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</u> 법시행령 제 14 조에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<u>100인</u>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p>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한국투자 KP <u>전문투자형</u> 사모 증권 투자신탁 13호(USD)(채권)"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의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, <u>투자설명서·자산운용보고서·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u> 등 교부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·<u>환매연기</u>·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, 기준가격의 일별공시, <u>회계감사</u>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                      (신설)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한국투자 KP <u>일반</u> 사모 증권 투자신탁 13호(USD)(채권)"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의 <u>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</u>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등 교부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·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,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</p> <p>④ <u>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. 다만,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법시행령 제271조의11 제1항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.</u></p>

	<p>1. 법 제 76 조 제 2 항. 다만, 법 제 9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2. 법 제 88 조. 다만,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3. 법 제 230 조 제 5 항</p> <p>4. 법 제 240 조 제 3 항부터 제 10 항까지의 규정. 다만,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5. 법 제 247 조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 제 42 조 제 1 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법 제 247 조를 이행하여야 한다). 이 경우 "투자설명서"는 "핵심상품설명서"로, "3 영업일"은 "3 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 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"으로 각각 본다.</p> <p>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37 조를 적용하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</p>
<p><b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</b>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 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 271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</li> <li>2.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 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</li> </ol>	<p><b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</b>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 "적격투자자"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 271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투자자</li> <li>2.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 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</li> </ol>
<p><b>제3조의3(투자권유 등)</b> ① 판매회사는 투자</p>	<p><b>제3조의3(투자권유 등)</b> ① 판매회사는 투자</p>

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법시행령 제271조의5에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.

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집합투자업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(이하 “핵심상품설명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(경미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③ 판매회사는 핵심상품설명서가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3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.

④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(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4항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)에게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5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,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. 다만, 판매회사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6항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.

⑤ 이 투자신탁(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7항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,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⑥ 판매회사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(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

	<p>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판매회사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)에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8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시행령 제 271조의5 제9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</p>
<p><b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<u>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8조(신탁금의 납입) ① ~ ③ (생략)</b>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71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</p>	<p><b>제8조(신탁금의 납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.</p>
<p><b>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 ① ~ ② (생략)</b></p> <p>③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</p>	<p><b>제13조(수익증권의 양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</p>

<p>다. 다만, 양도의 결과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다. 다만, 양도의 결과 <u>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</u>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-----</p> <p>가.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</p> <p>나.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</p> <p>다.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<u>(신설)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b>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-----</p> <p>가.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</p> <p>나.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</p> <p>다.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</p> <p><u>라.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2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271 조의 10 제 2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(신설)</u></p>	<p><b>제22조의2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b>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<u>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·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</p>

	<p><u>따른 요구를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법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시행령 제269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핵심상품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</u></li> <li><u>2. 법 제 88 조 제 1 항·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3. 법 제 93 조 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4.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5. 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</u></li> <li><u>6. 제 1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</u></li> <li><u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b>제23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) ①</b>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<u>49인</u>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말한다.</p>	<p><b>제23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) ①</b>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<u>100인</u>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말한다.</p>

1. 법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법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2 호 · 제 13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(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)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.

③ (신설)

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.

1. 법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. 법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2 호 · 제 13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

② 법 제9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는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수익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(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,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)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(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. 이하 제3항에서 같다)의 수를 더해야 한다.

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(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.

④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.

<p><b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) ①</b> ----- ----- 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----- ----- 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) ①</b> ----- ----- 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----- ----- 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1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</b>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 2. <u>손익계산서</u> (<u>신설</u>)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에 수익자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31조(결산서류의 작성 등) ①</b>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 2. <u>손익계산서</u> 3. <u>자산운용보고서</u>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<u>회계기간의 말일</u> 2. <u>투자신탁의 해지일</u></p>
<p><b>제36조(투자신탁보수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-----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----- 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<b>제36조(투자신탁보수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----- .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9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</b>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“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	<p><b>제39조(기타 운용비용 등) ①</b>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“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



<p>1.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<u>(신설)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1.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.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.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.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-2. <u>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u> (이하 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<b>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·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u></p>
<p><b>제47조(수익자에 대한 공시 또는 공고)</b> <u>집합투자업자가 법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수익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법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.</u> (신설)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 ① <u>집합투자업자가 법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수익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체 수익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법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② 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u></p>

	2.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
(신 설)	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-끝-